



"법제" (법제처)

~22. 11. 9.

목차

※ 클릭 후 파란 글씨 클릭하면 해당 주제로 이동합니다.!

목차	1
들어가기 전에...	3
법제	4
2022년 9월호	4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향한 법제 파수꾼	4
행정행위의 재심사의 법제도화(「행정기본법」 제37조)에 따른 후속과제	4
국회 입법과정 개정논의에 관한 고찰: 주요국 입법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4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부관에 대한 행정소송의 형식과 문제점	4
소비기한 표시제에 관한 법제 비교와 관련 판례 법리에 대한 고찰	4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쟁점과 향후과제*	4
전자책 - 법제 9월호 (통권 제698호)	4
2022년 6월호	5
2022년 3월호	6
법은 평가되어야 한다	6
스토킹행위·스토킹범죄 구성요건 연구	6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의의와 쟁점	6
난폭·보복운전 대응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6
독일 디지털 헬스케어법의 주요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	6
미국의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규제와 국가안보	6
폭행·협박 중심 강간죄에 관한 탈식민주의적 고찰	6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 자체감사 일원화의 법적 구조와 추진 방향	6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의 WTO TBT 협정 합치성	6
미국 부통령제의 재조명	6
소청심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법제적 개선방안	6
미국 연방법상 업무상 자살의 증명책임	6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법·정책적 개선방안 연구	6

2021년 12월호	7
지속되고 변화·발전되는 것, 새로 추가된 것, 찾아와야 할 것	7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요자 권익 개선방안	9
코로나19 팬더믹(대유행)으로 인한 여성노동의 취약성 분석과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12
AI 등 기술의 발전에 따른 고용정책의 전환	18
부부재산제와 재산분할에 관한 소고	25
비대면진료와 전자처방전의 관계 및 법제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	30
유럽의 법관 임용제도와 사법위원회	36
분할소유권 거래의 금융법적 쟁점	42
머신러닝을 통한 가격차별 및 가격담합에 대한 법적 접근	46
일부개정방식과 일괄개정법령 제명	51

들어가기 전에...

※ 만약

타 직렬이나 혹은 기타 다른 문서가 궁금하시다면

 "아카이브  " 참조 부탁드립니다...

※ 아카이브 및 아카이브에 링크된 모든 구글 문서들은

1. 공적 목적, 비영리적으로만 쓰입니다.
2. 모든 이들에게 항상 공개됩니다.
3. 원저작자의 요청시 삭제될 수 있습니다.
4. 본 문서 작성자는 저작권과 관련해 정부, 국가기관, 공공기관과 어떠한 관계가 없습니다.
5. 폰트는 Nanum Gothic입니다 (<https://hangeul.naver.com/font>)

※ 공공기관이 본 문서 작성자를 후원하지 않으며, 문서 내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에 대해 국가, 국가기관, 공공기관과 어떠한 특수한 관계도 없습니다

※ 문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권리는 대한민국 정부 및 해당 기관, 혹은 정부나 해당 기관에서 의뢰받아 작성한 해당 기업 등에 있습니다. 정부나 해당 기관 혹은 기업에서 삭제 요청시 예고 없이 해당 정보가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모든 문서는 공공 목적용, 비영리로만 쓰임을 알립니다. 문서 작성자는 문서 내 정보들에 대해 어떤 권한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정부에서 공적 목적으로 배포한 문서만을 어떠한 변형 없이 인용하고만 있음을 밝힙니다.

출처 :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List.mo?mid=a10402020000>

저작권자 : 법제처

공공누리 : 4단계

법제

2022년 9월호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향한 법제 파수꾼

행정행위의 재심사의 법제도화(「행정기본법」 제37조)에 따른 후속과제

국회 입법과정 개정논의에 관한 고찰: 주요국 입법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부관에 대한 행정소송의 형식과 문제점

소비기한 표시제에 관한 법제 비교와 관련 판례 법리에 대한 고찰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쟁점과 향후과제'

전자책 - 법제 9월호 (통권 제698호)

2022년 6월호

2022년 3월호

법은 평가되어야 한다

스토킹행위·스토킹범죄 구성요건 연구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의의와 쟁점

난폭·보복운전 대응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독일 디지털 헬스케어법의 주요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

미국의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규제와 국가안보

폭행·협박 중심 강간죄에 관한 탈식민주의적 고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 자체감사 일원화의 법적 구조와 추진 방향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의 WTO TBT 협정 합치성

미국 부통령제의 재조명

소청심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법제적 개선방안

미국 연방법상 업무상 자살의 증명책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법·정책적 개선방안 연구

2021년 12월호

출처 :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List.mo?mid=a10402020000>

저작권자 : 법제처

공공누리 : 4단계

지속되고 변화·발전되는 것, 새로 추가된 것, 찾아와야 할 것

공직생활 동안 담당했던 업무를 살펴보니, 법령심사 담당 기간이 제일 길고, 다음으로 행정심판 업무, 그리고 법제총괄 업무와 법령해석총괄 업무 등의 순이다. 법제처는 행정부에서 든든하고 믿음직하게 자리 잡고 있는 커다란 나무와 같다. 법령심사는 튼튼하고 굳센 나무줄기와 같고, 법령해석과 자치법제 등 법령지원업무는 몇몇 굵직한 가지와 같으며, 법제관련 행정업무는 나무를 멋지고 아름답게 균형 잡아주는 가지와 같다.

법제처가 지속되고 변화·발전하는 데 있어 핵심은 법령심사 업무다. 법령심사는 법제처 업무의 시작이자 끝이다. 법제처의 모든 업무는 법령심사에서 파생되고 수렴된다.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정부입법지원센터가 갖추어져 법령심사가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들 시스템이 갖추어지기 전 대한민국헌행법령집을 펴놓고 심사 대상 법령 조문을 일일이 확인하던 것은 까마득한 옛날 일이 되었고, 대한민국헌행법령집이 꽂혀있는 서가는 사무실의 장식품처럼 보인다.

지금도 아쉽고 다시 가져와야 하는 업무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신설되면서 거기로 이관된 행정심판 업무이다. 법제처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조직과 인력이 옮겨 갔다. 법제처로서는 커다란 상처이자 기능 저하를 가져온 뼈아픈 변화였다. 행정심판 업무를 다시 가져오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개정 법률안이 빨리 통과되어 법제처에서 행정심판 업무를 다시 담당하기를 기대한다.

법제처에서 세 가지 업무(법령심사업무, 행정심판업무 및 법령해석업무)를 함께 하면 유기적으로 잘 엮여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 법령해석업무를 하면서 법령조문이 얼마나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고, 법령 조문의 문장·단어 심지어 쉼표 하나 까지도 파급력이 얼마나 큰 지 직접 체험하게 된다. 행정심판업무를 하면서 법령집행 현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청구인의 고충을 접하며 그 어려움을 공감하게 된다. 이와 같은 업무경험과 관련 지식은 양질의 법령심사로 이어져 법령의 해석과 집행이 무리 없도록 법령 조문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 내 경험상 위 세 가지 업무가 법제처에 정립(鼎立)될 때, 법치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국민 권익이 크게 증진된다고 확신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요자 권익 개선방안

I. 서 론

II.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관

1. 장기요양보호의 개념
2. 장기요양보호의 헌법적 근거
3.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한 보호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

III.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용절차

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조사
2. 장기요양등급판정
3. 이의신청
4. 급여지급 및 장기요양기관의 이용
5. 갹신절차

IV.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요자 권익 개선방안

1. 신청 및 갹신절차의 간소화
2. 불복절차의 객관성 담보

V. 결 론

국문초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호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 및 간병 등의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보호를 받을 권리는 「대한민국헌법」 제34조에 규정된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일정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조문을 통해 국가가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할 헌법상의 의무를 부담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의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비대면이 필수인 시대에 장기요양과 같이 대면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더욱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등급을 받아야 하며, 인정 기간이 경과하면 갱신절차를 통해 다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인정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같은 비대면시대에, 더욱이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태로서 운신이 어려운 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서의 소견서를 발급받아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러한 일을 갱신 때마다 해야 하는 것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보다 간소화하고 수요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 포털과 장기요양기관 종합정보 관리시스템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수요자는 신청 의사만을 자신이 다니고 있는 의료기관에 밝히고, 의료기관이 진단서 등을 직접 발급해 현재 사용 중인 시스템으로 대리 신청하는 방법 등을 이용한다면 수요자의 편의는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등급을 받았으나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등급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장기요양심사위원회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수 있고, 이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러 번의 구제절차를 거칠 수 있는 점은 그만큼 권리가 구제될 기회가 많은 것이므로 수요자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구제절차는 수요자가 결과에 승복할만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장기요양심사위원회 대신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를 1차 구제절차로 하고 현재는 신청할 수 없는 행정심판절차를 2차 구

제절차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인정심사를 담당한 기관이 그에 대한 이의제기를 다시 심사하는 것에 대해 수요자가 그 심사가 온전히 객관적이고 신뢰할만 하다고 믿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 주제어: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절차, 신청방법, 행정심판, 수요자 편의, 메디케이드, 수발보험

코로나19 펜더믹(대유행)으로 인한 여성노동의 취약성 분석과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목 차

I. 문제의 제기

II. 여성 고용의 노동시장 현황 분석 및 관련 법령검토

1. 코로나 대유행에서 일자리 변화와 여성 노동시장의 취약성
 - 가.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일자리 변화
 - 나.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 여성 노동시장의 취약성
2. 여성들의 노동시장의 취약성 및 이탈행위 분석
3. 여성 일자리 관련 법령 검토
 - 가. 「양성평등기본법」
 - 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라. 「아이돌봄 지원법」
4. 여성 고용 취약성에 관한 문제점 지적 및 개선방안 제언
 - 가. 여성 고용 취약성에 관한 문제점
 - 나. 여성 고용의 취약성 보완을 위한 개선방안

III. 결론

국문초록

2020년 9월 4일 UN 총회 76개 회원국은 유엔, 회원국 의회, 국제의회연맹 간 상호협력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결의안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며, 감독을 담당하는 의회의 역할 강화와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 법의 지배강화 및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등을 위한 협력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SDGs는 “양성평등 및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은 물론, 이전 목표에서 다루지 못한 성차별의 구조적 문제와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 대표성의 동등한 기회 그리고 평화 및 재건에 여성을 포함하였다. 현재 코로나19는 민주주의와 충돌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삶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있고, 코로나 대재앙 속에서, 엄격한 통제 관리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는 이러한 위기상황에서는 사치가 되어 버렸고, 극단적인 개인주의적 사고와 이기주의는 생존을 위해 정당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우리의 법적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개인의 자유와 행복, 삶과 함께 연동될 수 있도록 개선점을 모색해야 한다. 2019년 말 발생한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의 방식과 사고의 패러다임의 변동을 가져왔고, 2021년 11월 1일 ‘With 코로나19’시대가 선언되면서, 코로나19는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직장인으로서 해야 할 역할, 사회구성원으로서 영위해왔던 삶의 방식과 양식의 대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다. 특히 여성 노동시장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현재 여성 고용의 특징은 첫째, 채용절차, 노동시간, 노동의 형식과 방법의 변화이며, 둘째, 여성인력들은 경영악화로 최소 운영인력을 제외하고는 해고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여성을 노동시장에서 극단의 취약성에 놓이게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코로나19로 인해 여성 인력의 자의적, 타의적 이탈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국내법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양성평등기본법」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살펴보고, 경제주체로서의 여성, 노동자로서의 여성, 엄마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검토하고, 여성 고용 이탈에 관한 정책적 보호에 관한 제도적 강화방안을 연구한다.

아울러, 여성의 인적자원관리란 여성만을 독자적으로 분리하여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열악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을 살

펴보고자 하며, 국내의 법을 개관하여, 여성 노동과 관련된 직·간접적 영향요인을 찾아,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주제어: 코로나19 팬더믹, 여성 고용, 취업 시장, 노동시장, 노동제도, 경력단절, 아이돌
붐, 양성평등

I. 문제의 제기

1. 연구 목적 및 문제 제기

Coronavirus19 Pandemic(이하 코로나19라고 함)은 우리의 삶의 방식과 사고의 패러다임의 변동을 가져왔다. 가족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과 직장인으로서 해야 할 역할, 사회 구성원으로서 영위해왔던 모든 방식과 양식의 전환점이 되었으며, 코로나19는 고전적 고용 형태의 탈피를 가속화시켰다. 고용형태의 탈피는 첫째는 채용절차, 노동시간, 노동의 형식과 방법의 변화이며, 둘째는 경영악화로 최소 운영인력을 제외하고는 해고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는 인류의 삶을 변화시켰다. 최근 미국 심리학 협회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가 우리의 꿈마저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이다.¹⁾ 코로나19로 인해 야기되는 불안, 스트레스, 걱정이 낮시간에만 국한되지 않고 밤까지 이어져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단지 수면(꿈)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향한 꿈을 변화시키고 있는 듯하다. 국제적인 재난은 국가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국가 주도의 법치주의만을 강조하고 있다.²⁾ 실제로 코로나19는 민주주의와 충돌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삶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있고, 코로나 대재앙 속에서, 엄격한 통제 관리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는 이러한 위기상황에서는 사치가 되어 버렸고, 극단적인 개인주의적 사고와 이기주의는 생존을 위해 정당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우리의 법적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개인의 자유와 행복, 삶과 함께 연동될 수 있도록 개선점을 모색해야 한다.

2020년 9월 4일 UN 총회에서 76개 회원국은 유엔, 회원국 의회, 국제의회연맹 간 상호협력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³⁾ 해당 결의안은 코로나19라는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국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감독을 담당하는 의회의 역할을 강조함은 물론,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 법의 지배강화 및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등을

1) 이성규 (2020), "코로나가 우리의 '꿈'도 바꿨다", 『The Science Times』 (9월 29), 최초 방문 2020년 9월 30일.

2) 실제로, Afsoun Afsahi, Emily Beausoleil, Rikki Dean, Selen A. Ercan, and Jean-Paul Gagnon의 "Editorial Democracy in a Global Emergency Five Lessons from the COVID-19 Pandemic"이라는 논문을 살펴보면, 코로나19가 이미 멸종 위기에 처한 민주적 기관에 붕괴를 가져오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는 계층화되며, 정치인에 대한 불신, 국민의 좌절, 민주주의 정치의 타협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며, 이러한 문제를 표출할 수 있는 시위나 집회도 제한된 상황에서, 민주주의 퇴보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본다.

3) NARS, 『국제관계 동향과 분석』, 국회입법조사처, 1면.

위한 협력을 과제로 제시하였다.⁴⁾ 또한, UN의 SDGs는“양성평등⁵⁾ 및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전 목표에서⁶⁾ 다루지 못한 성차별과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와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 대표성의 동등한 기회 그리고 평화 및 재건에 있어 여성을 포함하고 있다. SDGs 중 5번째 목표인 성평등 달성을 이룩하기 위한 진일보한 구체적인 실천이 요구되는 가운데, 5번째 목표 이외에도 기타 10개 목표에 성평등 이슈가 포함됨으로써, SDGs가 다양한 영역에서 성 주류화를 실현하였고 이를 통해 보다 통합적인 성평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⁷⁾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SDGs에 관한 협력은 국제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기조이며, 한국의 여성 노동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시민으로서의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현실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여성 인력의 자의적, 타의적 이탈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여성은 크게 3가지의 역할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경제주체로서의 여성, 노동자로서의 여성, 엄마로서의 여성이 그것이다. 이러한 3가지 역할을 구분하여, 여성 고용 이탈에 관한 정책적 보호에 관해 연구한다. 마지막으로, 여성인력 이탈 현상에 대한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 방안 및 국가 정책적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AI 등 기술의 발전에 따른 고용정책의 전환

AI 등 기술의 발전에 따른 고용정책의 전환

김성화 (Sung-Hwa Kim)
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논문접수 : 2021. 11. 05.

심사개시 : 2021. 11. 08.

게재확정 : 2021. 11. 25.

목 차

I. 머리말

II. 미국과 독일의 AI 기술에 관한 고용정책

1. 미국
2. 독일

III. 고용정책의 변화와 그 영향

1. 기술혁신에 따른 고용정책
2. 유형에 따른 영향

IV. 맺음말-우리 고용정책에 대한 시사점-

1. 고용대체에 대한 체계적 대응의 필요성
2. 근로형태 및 방식의 이동에 대한 대응방안 구축
3. 시사점

국문초록

제4차 산업혁명이 진전됨에 따라 기존의 직업체계가 변화되면서 일부 직업이 소멸 또는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직면한 문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OECD의 직업정형업무집약도에서 가장 높게 평가됨에 따라 향후 직업의 대체가능성이 광범위할 뿐 아니라, 그 비율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그러므로 직업의 대체가능성을 정부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독일의 논의방향과 시장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수행하는 미국의 논의방향 모두 향후 우리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에 있어 필요하다고 본다. 직업의 대체가능성을 정부에 의하여 재정지출을 통한 고용정책을 추진하는 경우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도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미국과 같이 효과가 없는 지원프로그램 및 인력개발프로그램을 개선하거나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이 높은 임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다양한 경로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입법·정책적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본다. 한편, 정부에 의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의 실행이 없이는 긴급한 현안검토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산업계를 비롯하여 정형적 업무나 비정형적 업무를 구분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 내외에서의 교육·훈련 제도의 확충, 실업수당을 포함한 재분배제도의 정비, 고등교육기관에서 차세대 기술분야의 인재육성 등이 시급하다. 특히 고용의 상실보다 근로형태나 방식의 이동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숙성(현재의 직업 및 교육수준, 지역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고려하여 다른 정책과의 연계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정책의 계획이나 수행에 있어 필요한 범위에서 정부에 의한 감독기준을 완화하여 고용노동부가 아닌 산업단체, 비영리기관 등 자격을 갖춘 제3자에 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승인하는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 의한 프로그램의 운영이 경영현실에 적합하지 않거나 실무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AI 기반산업, 사이버보안 및 보건 등의 핵심영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의 필요성도 있으나, 이는 정부의 정책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사회보장보험체계와 관련하여 단순히 실직자를 위한 실업보험에서 근로자를 위한 고용보험으로 전환하기 위한 체계의 전환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수준 높은 양질의 고용을 위한 정책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근로의 방식이나 기업조직의 기본방향을 바꾸는 과정 및 절차에서 근로자의 의견을 상당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제4차 산업혁명에서는 과학기술이나 비즈니스모델의 진전을 예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산업계 및 정부기관, 학계의 적극적이면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 주제어: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제4차 산업혁명, 총요소생산성, 고용전환

I. 머리말

캐나다의 비영리 독립 정책연구기관인 프레이저연구소(Fraser Institute)는 정부의 규모, 법적 체계 및 재산권 보호, 자본건전성, 국제무역자유도, 각종 규제 등의 5개 부문에 관한 지표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2021년에 발표된 세계 경제자유도보고서¹⁾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경제자유도는 조사대상 전체 165개 국가 중 47위로서 그 중 기업규제 부문은 25위이고, 자본시장규제 부문은 43위이며, 특히 낮게 평가된 분야는 노동시장규제 부문으로서 151위이고, 각종 규제 부문도 70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많은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또한 2020년 10월에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노동시장 유연성지표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독일 등에 비해 고용 및 해고규제, 근로시간규제, 노동비용 등 3가지 측면에서 경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독일의 노동시장유연성은 2003년 당시 123개국 중 80위로서 63위인 우리나라보다 낮았지만, 2003년에 하르츠개혁에 의하여 2019년에 독일은 전체 162개국 중 38위로 오르는 동안 우리나라는 144위로 급락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경직화되는 동안 독일은 파견 및 기간제규제와 해고규제를 완화하고, 노동비용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한 결과라고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노조단결권의 강화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다수 도입되었고, 특히 문재인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의 급증과 근속 2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확대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기업의 노동비용부담이 급증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심화되었다.²⁾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인하여 인공지능(AI)이나 로봇 등 새로운 기술이 대두됨에 따라 고용 및 노동정책에 다양한 변화가 야기되고 있다. 종래에는 혁신적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새로운 직업이나 업무 등이 생기면서 고용이 창출되었으나, 최근에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등에 의하여 신규 업무가 거의 생기지 않고, 오히려 고용대체의 우려가 증가되고 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 하에서 노동시장의 변화는 매우 다양하게 나

1) Fraser Institute,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21 Annual Report」, 2021, p. 8, 13.

(<http://www.fraserinstitute.org/sites/default/files/economic-freedom-of-the-world-2021.pdf>) (최종확인 2021. 11. 5).

2)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경직성은 기업의 인력운용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야기하며,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주요국처럼 고용이나 해고의 규제 완화, 근로시간의 유연성 제고, 과도한 노동비용 합리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한국경제연구원, 한국과 독일 노동시장 유연성과 청년실업 비교 보도자료, 2020. 10. 21., 1-3면).

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고용 및 노동에 관한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미국이나 독일의 정책적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고용 및 노동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직업의 소멸과 신생 직업의 발현 등의 과정에서 근로자성의 문제, 관련 노무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 및 사회보험제도 등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이 글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에서 노동법적 관점보다 노동정책적 관점에서 직업의 대체가능성을 정부에 의할 것인지 또는 시장에 의할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기술의 발전이 고용정책에 미치는 영향이나 고용창출과 근로자 이식에 관한 교육과 연수 및 인재육성계획 또는 입법적 현황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부부재산제와 재산분할에 관한 소고

부부재산제와 재산분할에 관한 소고*

- 프랑스 부부재산제와 청산을 중심으로 -

김현진 (Hyunjin KIM)**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논문접수 : 2021. 11. 05.

심사개시 : 2021. 11. 08.

게재확정 : 2021. 12. 10.

목 차

- I. 들어가며
- II. 프랑스 부부재산제의 발전과 체계
 - 1. 프랑스 부부재산제의 발전
 - 2. 부부재산제의 선택의 자유와 제한
 - 3. 부부재산제의 변경과 해소
- III. 프랑스 부부재산제의 구체적 모습
 - 1. 법정재산제 : 혼중취득재산공동제
 - 2. 약정공동재산제
 - 3. 별산제
 - 4. 혼중취득재산참가제
- IV. 우리나라 부부재산제의 현재
 - 1. 우리나라 부부재산제의 특징
 - 2. 약정부부재산제
 - 3. 법정부부재산제
 - 4. 이혼과 재산분할
 - 5. 배우자 일방의 사망과 부부재산제의 청산
- V. 나가며

* 본 논문은 2021년 인하대학교 연구비의 지원을 받았다. 심사과정에서 의미있는 지적을 통해 논문의 완성도를 높여주신 심사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변호사

국문초록

혼인은 배우자들의 재산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혼인한 부부의 재산의 귀속, 관리 및 처분은 혼인 전 두 배우자의 경제적 상황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부부재산제는 혼인 중 혼인공동체의 일체성과 개인의 독립성이 조화롭게 고려되어야 한다. 나아가 특히 혼인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 혼인의 해소 후 혼인 중 이룩한 재산과 부채는 배우자 간에 또는 그들의 상속인들에게 돌아가야만 한다는 점에서, 부부의 재산관계에 관한 규율의 총체인 부부재산제를 규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민법 제829조에 따르면, “부부가 혼인 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정 법정부부재산제인 별산제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부부재산 약정은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법문에서 부부재산 약정이라는 형식적 틀만 제공하고 있는 점, 부부재산약정은 혼인 중의 재산제에 대하여만 규율할 뿐 만약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면 이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라고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일 것이다. 그런데 프랑스는 실제로 상당수가 혼인 전에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는데, 민법이 약정재산제의 구체적 내용을 규율하고 있고, 혼인 중에 그 내용은 변경할 수 있고, 법정부부재산제이든 약정부부재산제이든 재산제의 해소를 위한 선택, 상환 그리고 분할을 규율하는 민법규정이 방대하고 매우 세밀하며 철저하다. 나아가 부부재산제의 해소는 이혼뿐만 아니라 배우자 사망, 별거 나아가 혼인 중이라도 법원에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어 매우 합리적이다. 우리나라의 부부재산제에 관한 민법의 개정에 있어 프랑스 부부재산제에 관한 본고가 참고자료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

※ 주제어: 부부재산제, 프랑스민법, 공동재산제, 별산제, 부부재산계약, 재산분할, 청산

I. 들어가며

혼인은 배우자들의 재산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혼인한 부부의 재산의 귀속, 관리 및 처분은 혼인 전 두 배우자의 경제적 상황과 다르기 때문이다. 먼저, 혼인 중 제3자와의 관계에서 각 배우자는 개인적으로 또는 부부의 일체로서 각종 채권 및 채무를 갖게 된다. 그리고 혼인생활을 하면서도 배우자 간에 채권과 채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하여 부부재산제는 혼인 중 혼인공동체의 일체성과 개인의 독립성이 조화롭게 고려되어야 한다. 나아가 특히 혼인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 혼인의 해소 후 혼인 중 이룩한 재산과 부채는 배우자 간에 또는 그들의 상속인들에게 돌아가야만 한다는 점에서, 부부의 재산관계에 관한 규율의 총체인 부부재산제를 규율할 필요가 있다.¹⁾

우리나라 민법 제829조에 따르면, “부부가 혼인 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정 법정부부재산제인 별산제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부부재산 약정은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법문에 부부재산 약정이라는 형식적 틀만 제공하고 있는 점,²⁾ 부부재산약정이 혼인 중의 재산제에 대하여만 규율할 뿐 만약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면 이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라고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일 것이다. 한편 민법상 이혼시 재산분할을 통해 부부재산제의 청산이 이루어지는데, 혼인 후 단독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도 상대배우자가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면 명의에 관계없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법정부부재산제는 별산제이되 이혼시 채권적 청산을 하는 일종의 절충형을 취하고 있다.³⁾ 그런데 이혼시 재산분할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이 재판상황을 고려하여 비율을 정하는바,⁴⁾ 법관에게 재량이 있다. 그런데 혼인 중에는 별산제이나 이혼시 명의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을 결여하고 현실과 법규의 괴리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규정이 없어 사실상 판례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갖고 프랑스 민법상 부부재산제와 그 청산을 들여다보면, 프랑스는

1) Ph. Malaurie et L. Aynès, *Droit des régimes matrimoniaux*, 5^e éd., 2015, LGDJ, n° 1, p. 13.

2) 同旨: 윤진수 편집대표, 『주해친족법』 제1권, 박영사(2015), 제829조(이동진 집필부분), 246면.

3) 전경근, “현행 민법상 부부재산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족법연구 제19-1호(2005), 187-188면.

4)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실제로 상당수가 혼인 전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는데,⁵⁾ 민법이 약정재산제의 구체적 내용을 규율하고 있고, 혼인 중에 그 내용의 변경이 이루어지고, 법정부부재산제이든 약정부부재산제이든 재산제의 해소를 위한 선회, 상환 그리고 분할을 규율하는 민법규정이 방대하고 매우 세밀하며 철저하다. 나아가 부부재산제의 해소는 이혼뿐만 아니라 배우자 사망, 별거 나아가 혼인 중이라도 법원에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어 매우 합리적이다. 그런데 프랑스 민법상 부부재산제⁶⁾는, 1804년 제정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제1387조에서 제1581조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조문에 걸쳐 그 체제가 조금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⁷⁾ 전체 7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⁸⁾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프랑스의 부부재산제 및 그 해소에 관하여 전체 구조 및 입법연혁을 살핀 뒤(II), 각각의 재산제에 따른 내용을 소개하고 분석한다(III). 이어 위 프랑스 부부재산제에서 얻은 시사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민법상 부부재산제의 현주소와 문제 상황을 언급한 후(IV), 결론에 갈음하여 혼인 중 재산제 변경의 필요성 및 우리나라의 별산제의 한계와 개정을 위한 법제를 모색 내지 제안한다(V).

비대면진료와 전자처방전의 관계 및 법제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

비대면진료와 전자처방전의 관계 및 법제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

백경희 (Kyoung-Hee Baek)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논문접수 : 2021. 11. 05.

심사개시 : 2021. 11. 08.

게재확정 : 2021. 12. 10.

목 차

- I. 서론
- II. 비대면진료 내지 원격의료의
의의와 현행법상 규율
 - 1. 원격의료의 의의와 기능
 - 2. 의료법상 원격의료에 관한 현행법상
규율
 - 3. 비대면진료의 의의와 현행법상 규율
- III. 전자처방전의 의의와
현행법상 규율
 - 1. 처방전 및 전자처방전의 의의와 기능
 - 2. 전자처방전에 관한 의료법상 규율
- IV. 비대면진료 및 전자처방전의
활용과 관련 판례 등의 태도
 - 1.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전화상담·처방의 현황
 - 2. 우리나라 전자처방전 시범사업 추진
실태
 - 3. 우리나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태도
- V. 일본의 원격의료와 전자
처방전 법제와 활용 현황
 - 1. 일본의 원격의료와 전자처방전에
관한 법제
 - 2. 일본의 전자처방전에 관한 정책
- VI. 우리나라의 전자처방전에
관한 법제의 개선방향
 - 1. 일본의 원격의료 및 처방 정책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 2. 비대면진료와 전자처방전의 관계
 - 3. 전자처방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향
- VII. 결론

국문초록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19 사태의 발발 후 2020. 2. 보건복지부는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의료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형태인 의사와 환자 사이의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였고, 그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전화상담 및 처방이었다. 이후 2020. 12.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심각 단계의 감염병위기 상황 시 비대면진료의 한시적 허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시행 중에 있다. 이중 비대면진료 시의 처방전 발급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도록 안내한 바 있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의료법에서는 이미 전자처방전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서, 비대면진료 시의 처방전 발급을 전자처방전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팩스 또는 이메일로 처방전을 전송하지 않고도 곧바로 의료기관으로부터 약국에 전자처방전을 송부할 수 있어 편의성과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처방전 제도와 관련하여 민간업체의 개입이나 수수료 등 비용 부담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전자처방전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2020. 4. 30. 후생노동성은 전자처방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처방전의 운용 가이드라인 제2판을 발행하여 배포하였고, 2020. 7. 17. 국민의 건강 수명의 추가 연장 및 효율적인 의료·간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ICT를 활용하여 건강·의료·개호 영역의 빅데이터를 집약·활용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는, ‘데이터헬스개혁’ 추진의 하나로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2022년 여름까지 전국적 범용화를 완료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일본은 처방전의 완전한 전자화를 통하여 약력의 중앙관리 등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업무 효율화, 보건의료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실현하려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전자처방전의 운용 가이드라인 상 전자처방전 구축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여 우리나라의 전자처방전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 향후 법제의 개선방향이 어떠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 주제어: 코로나 19,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 의약분업, 보건의료빅데이터

I. 서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세계적으로 대유행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한 기간 동안 감염병위기경보가 '심각'단계가 지속되고 있다(이하 우리나라의 현 상태를 '코로나 19 사태'로 약칭한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별로 적용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의료계에서는 의료진과 환자와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비대면진료가 시행되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19 사태의 발발 후 2020. 2. 보건복지부는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의료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형태의 의사와 환자 사이의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였고, 그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전화상담 및 처방이었다. 이후 2020. 12.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약칭한다)의 개정을 통하여 심각 단계의 감염병위기 상황 시 비대면진료의 한시적 허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현 시점에도 시행 중에 있다. 즉, 코로나 19 사태로 사회 분야나 정치·공공 분야,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의료 분야에서도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 '비대면(非對面)' 내지 '언택트(Untact; '언택트'는 직접 대면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접두사 'Un'과 대면하다는 의미의 'Contact'를 결합한 신조어인데, 원래 비대면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무인 기기나 인터넷의 사용 증가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직접적인 대면 접촉이 줄어든 현상을 지칭한 것이다.¹⁾의 특징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게 된 것이다.²⁾

한편 우리나라 의료법에서는 이미 전자처방전 — 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 —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서, 비대면진료 시에 처방전 발급을 전자처방전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팩스 또는 이메일로 처방전을 전송하지 않고도 곧바로 의료기관으로부터 약국에 전자처방전을 송부할 수 있어 편의성과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처방전 제도와 관련하여 민간업체의 개입이나 수수료 등 비용 부담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전자처방전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코로나 19 사태를 계기로 일시적으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비대면진료 및 전자처방전에 근거한 처방약 배달서비스까지

1) 이에 대해서는 김성일,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식 전환 연구, 인문사회21(제11권 제6호, 2020. 12), 1419면을 참조하기 바란다.

2) 오형근, 코로나19 이후 주요 사회변화와 정보보안 이슈 분석, 정보과학회지(제38권 제9호, 2020), 48-50면; 관계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 -,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2020. 7. 14), 3-4면.

법제논단

연동화되면서 환자들은 새로운 의료의 형태를 접하게 되었고, 편의성과 효율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2021. 10. 20.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전자처방전 제도와 관련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이 아닌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제안이 이루어지기도 한 바 있다.³⁾ 그런데 코로나 19 사태가 심각 단계의 감염병 위기 상황을 벗어나거나 대유행이 종식되었을 때에는 더 이상 감염병예방법 상의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비대면진료가 허용되지 않고 다시 의료법 상의 의료진 사이의 원격자문의 형태만이 가능한 것으로 규율되게 된다면, 과연 비대면진료나 처방약 배달서비스라는 시시를 상실한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전자처방전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⁴⁾

이에 본고에서는 비대면진료 및 원격의료의 의의와 현행법 상 규율, 전자처방전의 의의와 현행법 상 규율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에서 전자처방전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고 그에 대하여 판례는 어떠한 취급을 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일본의 전자처방전에 관한 법제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전자처방전에 관한 법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럽의 법관 임용제도와 사법위원회

유럽의 법관 임용제도와 사법위원회*

-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에 관하여 -

윤찬영 (Chanyoung Yoon)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논문접수 : 2021. 11. 05.

심사개시 : 2021. 11. 08.

게재확정 : 2021. 11. 25.

목 차

I. 서론

II. 이탈리아

1. 이원적 사법체계
2. 최고사법위원회와 법관임용
3. 법관인사와 전문성

III. 프랑스

1. 이원적 사법체계
2. 최고사법위원회와 법관임용
3. 법관인사와 전문성

IV. 네덜란드

1. 혼합적 사법체계
2. 사법위원회와 법관임용
3. 법관인사와 전문성

V. 결론

* 본고는 윤찬영, 법조일원화 시대의 법관전문화 방안, 사법정책연구원 (2021) 제3장 제2절 및 제4절의 일부에 유럽 3개국 사법위원회의 권한 및 구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으로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국문초록

우리나라는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유럽의 대륙법계 국가들과 같은 즉시임용제가 아닌 충분한 법조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보통법계 법조일원화 방식의 법관 임용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 법관 임용제도는 현재 즉시임용제에서 법조일원화로 나아가는 과도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법관 임용제도는 각 나라의 사법체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단지 법관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늘린다고 하여 성공적인 법조일원화가 달성되기는 어렵다. 법관 임용제도의 개혁은 기존의 인사제도와 관행 나아가 전반적인 사법제도를 고려하여 정밀하게 설계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최근에는 즉시임용제를 채택한 유럽식 사법위원회를 참조하여 법원 외부에서 법관임용에 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유럽의 사법위원회는 프랑스법계(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국가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그 중 이탈리아, 프랑스는 전통적인 남유럽 모델을, 네덜란드는 북유럽 모델을 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들 유럽 3개국의 사법체계와 법관 임용제도를 중심으로 보되 그 가운데 사법위원회의 법관임용에서의 역할도 함께 살펴본다.

※ 주제어: 사법위원회, 사법체계, 법관 임용제도, 법조일원화, 즉시임용제도, 전보금지원칙

I. 서론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법관으로 즉시 임용하는 제도¹⁾를 채택하여 법관으로 임용된 후 근무 과정에서 배워가는 도제식(training-on-the-job) 시스템을 운영하였고 사법연수생과 법관에 대한 교육과 연수를 중요한 사법행정업무의 하나로 여겨왔다. 그러나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라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²⁾를 도입하게 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³⁾ 그런데 현재 우리 사법 환경이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중에서 우수한 법관의 임용이 가능한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있고, 그로 인하여 최근 법관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5년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본회의에서 부결되기도 하였다.⁴⁾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일각에서는 다양한 법관의 임용을 위해서 법원 외부에서 법관인사에 관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유럽의 사법위원회가 적절한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

유럽의 사법위원회(Councils of the Judiciary)는 유럽 각국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고 사법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사법부와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부기관 및 국회 사

- 1) 우리나라에서는 '즉시임용제'를 대신하여 흔히 '경력법관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대법원 홈페이지 <https://judges.scourt.go.kr/appjudge/intro/Unification.work>, 2021. 10. 31. 최종방문: 법원행정처, 법관인사제도개선백서, 2004, 226 등). 이는 'career judgeship'을 번역한 것으로 'career judge'란 독일, 프랑스 등과 같이 법관의 임용자격과 관련하여 법학학위와 사법연수 과정 수료 후의 시험 합격 외에 별도의 법조경력을 요구하지 않아 법관으로 임용되면 자신의 직업생활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법원에서 보내게 되는 법관을 의미하는 것에서 유래하였다(Giuseppe Di Federico (Ed.), Recruitment, Professional Evaluation and Career of Judges and Prosecutors in Europe: Austria, France, Germany, Italy, The Netherlands and Spain, Research Institute on Judicial Systems (IRSIG) (2005), 71). 그러나 대법원이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13년 이후 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고 있는 절차를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로 지칭하고 있는 점(대법원 홈페이지 <https://judges.scourt.go.kr/appjudge/intro/Generaljudge.work> 참조, 2021. 10. 31. 최종방문)에 비추어 '경력법관제'란 용어는 혼동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개정 법원조직법 시행 이전의 법관 임용제도를 지칭하는 용어로 임용시기에 중점을 둔 표현인 '법관 즉시임용제도' 또는 '즉시임용제'를 사용한다.
- 2) 상당한 법조경력을 가진 자 가운데 법관을 임용하는 임용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영국식 보통법계 제도(English common law system)'에서 유래한 것이나[전직 영국 항소법원(Court of Appeal) 대법관 Anthony Hooper 인터뷰 등 참조(<https://www.chambersstudent.co.uk/where-to-start/newsletter/the-big-interview-sir-anthony-hooper>)],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널리 받아들여진 '법조일원화 제도'로 표기한다.
- 3) 즉 법원조직법이 2011. 7. 18. 법률 제10861호로 개정됨에 따라(이하에서는 위 개정법을 '개정 법원조직법'이라 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판사의 임용자격이 종전의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친 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서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로 10년 이상 재직된 사람으로 변경되어(제42조 제2항, 제1항),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경력을 지닌 법률가로 법관임용 자격이 제한되게 되었다. 다만 재직연수에 관해서는 부칙 제2조에서 단계적으로 필요경력기간을 높여 그 온전한 시행 시점은 2026년 이후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국회는 2021. 12. 9. 본회의를 열어 개정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중 "2021년 12월 31일까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함으로써 완전한 시행 시점을 2029년 이후로 연기하였다.
- 4) 법률신문 기사, "재판 지연 피해는 국민에게... 법조계 우려 확산-국회, 법원조직법개정안 부결 파장" (2021. 9. 13.) 참조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2853&kind=AA01>, 2021. 10. 31. 최종방문).

이의 독립된 중재기관으로 설립되었다.⁵⁾ 크게는 전통적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남유럽 모델과 상대적으로 최근에 도입된 스웨덴, 덴마크 등의 북유럽 모델이 있다. 유럽에서는 왕정 시대부터 역사적으로 국왕이 사법권을 갖는 삼권통합 체제를 취하고 있었고 그 영향으로 근대에 넘어와서도 법무부 등 행정부가 사법행정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사법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부 및 정치권으로부터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분리해 사법부에 부여하는 과정에서 사법위원회가 설립되기 시작하였다.⁶⁾ 이처럼 사법위원회는 미분화된 삼권을 분화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구성된 조직의 성격이 강하다. 전통적인 남유럽식 사법위원회의 주된 기능은 행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법관인사의 독립에 있었으나,⁷⁾ 북유럽의 사법위원회는 사법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개정과 예산 편성에 관여하고 사법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그 주된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고,⁸⁾ 이러한 경향은 다시 남유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법위원회 전반에 대한 논의는 그 자체로 방대한 내용이 되므로 다음으로 미루고 이 글에서는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의 사법체제와 법관 임용제도를 중심으로 보면서 법관임용과 관련된 사법위원회의 역할을 살피기로 한다. 유의할 것은 각국의 사법위원회 제도를 볼 때 있어서는 해당 국가의 사법제도 전반과 함께 살펴야 올바른 이해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유럽의 사법체제는 전체적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법계, 독일법계, 북유럽법계가 약간씩 다른 모습을 보인다.⁹⁾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는 프랑스법계 국가에 속하면서도, 사법위

5) Wim Voermans and Pim Albers, Councils for the Judiciary in EU Countries, Council of Europe, European Commission for the Efficiency of Justice (CEPEJ), (Strasbourg, 2003), 14. 한편, 사법의 효율성 확보를 사법위원회의 부차적인 역할이라고 주장하는 견해(참여연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법원조직법 개정 입법의견서 (2020. 11. 16.)), 10 참조(원문은 <https://www.peoplepower21.org/Petition/1744713> 에서 검색가능, 2021. 10. 31. 최종방문)도 있으나 이는 유럽 사법위원회 운영의 실제와는 다소 동떨어진 분석이다.

6) Wim Voermans and Pim Albers, 앞의 보고서, 9.

7) 그러나 실제로는 유럽에서는 법관임용에서 정치적인 성향이 아닌 능력(merit)에 따라 법관을 선발하는 전통과 법률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법위원회는 이를 공식화하는 기관으로 도입되었을 따름이다. 여기서의 능력은 법관직 수행에 필요한 적격성(specific qualifications for judicial office), 즉 법률분야에 관한 숙련도를 의미한다. Paul Bovend'Eert, "Recruitment and appointment of judges and justices in Europe and the US", NVvR: de vakvereniging van officieren van justitie en rechters (2018. 5.), 2, 4. 항 참조(<https://trema.nvvr.org/uploads/documenten/downloads/2018-05-Artikel-BovendEert.pdf>, 2021. 10. 31. 최종방문).

8) Wim Voermans and Pim Albers, 앞의 보고서, 14~17. 스웨덴에서는 1975년에, 덴마크에서는 1999년에, 네덜란드에서는 2002년에 각 최고사법위원회 내지 사법위원회가 설립되었는데(이들 국가는 이탈리아, 프랑스와 같은 남유럽 국가와는 달리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여전히 왕국을 유지하고 있다) 그 설립시기가 늦어진 반면 모두 예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

9) 유럽 대륙의 법계를 위와 같이 구분하는 방식은 Marco Fabri and Philip M. Langbroek, "Is There a Right Judge for Each Case? A Comparative Study of Case Assignment in Six European Countries", 1(2) European Journal of Legal Studies 292, 293 (2007) 참조. 다만 프랑스법계로 분류되기도 하는 네덜란드의 현행 법관임용 방식은 북유럽과 유사한 면도 가지고 있고, Brexit 이후를 고려하여 국제상사재판부를 설치하고 영국의 보통법 체제를 받아들이는 등 대륙법과 보통법의 혼합적 성격을 보인다.

원회에 관해서는 이탈리아, 프랑스는 남유럽계로, 네덜란드는 북유럽계로 분류되는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위 3개국의 법관인사와 사법위원회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비교법적으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특히 네덜란드는 시기적으로 가장 최근인 2002년 사법위원회를 도입하면서 유럽 각국의 사법위원회를 참고로 하였는데,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 전반적으로는 프랑스법계 사법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북유럽계 사법위원회 제도를 채택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할소유권 거래의 금융법적 쟁점

분할소유권 거래의 금융법적 쟁점

-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

이재경 (Jae-Kyoung Lee)
건국대학교 상허교양대 교수/변호사

논문접수 : 2021. 11. 05.

심사개시 : 2021. 11. 08.

게재확정 : 2021. 12. 10.

법제 | Legislation

목 차

I. 서론

II. 미술품 분할소유권 시장의 현황

1. 시장 현황
2. 국내 사업체 개관
3. 국내 시장 현황에 대한 시사점

III. 미술품 분할소유권의 자본시장법상 쟁점

1. 자본시장법적 접근의 의의
2. 분할소유권 거래에 대한 금융법적 접근
3. 미술품 분할소유권 플랫폼사업의 금융법상 성격
4. 소결론

IV. 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의 활용 및 법률적 규율

1. 블록체인의 등장과 금융법적 고찰
2. 미술 등 콘텐츠시장에서의 활용
3. 미술품 등 콘텐츠 분할소유 플랫폼의 활용
4.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검토
5. 해외의 규제사례

V. 결론

국문초록

2017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고가의 미술품을 작은 단위로 분할하여 다수 당사자들이 구매하는 거래구조가 미술계에서 시작된 이래, 분할소유권 거래방식이 음악저작권을 포함하여 콘텐츠업계의 새로운 거래 흐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령 또는 선행 판례 등 규율 체계가 전무한 실정이며, 현행 상사법으로 규율되지 못한 상황에서 자본시장법 등 금융법을 중심으로 새로운 쟁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무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 더구나, 이러한 거래는 온라인으로 실시되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포함하는 거래구조로 진행되고 있고, 다수의 거래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비대면 거래 활성화 등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미술계를 포함하여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콘텐츠 유통의 새로운 흐름에 대한 법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콘텐츠업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구조의 경우, 우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상품 또는 파생상품 해당 여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미국증권법상 Howey 기준과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중요한바, 자본시장법의 범위를 무한정 확정할 수 없으므로 자본시장법상 규율이 적용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술품 분할소유권 플랫폼사업자가 집합투자업에 해당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자본시장법상 규율을 받아야 할 수 있으며, 가상자산 거래를 규율하는 특정금융정보법의 적용가능성도 논의되어야 한다. 아울러, 위 플랫폼사업자가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작품에 대한 지분을 판매하는 양상을 보인다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할 수도 있다.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가 우리나라 미술시장에서 아직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폐해가 나타나지 않지만,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 규모가 커지고 소비자에 대한 금융법적인 보호의 목소리가 커진다면, 금융 당국의 개입 상황에 대비하여 해당 사업체 관계자나 소비자들은 업계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해당 거래에 입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미술품 분할소유권, 자본시장법, 투자계약증권, Howey기준, 금융투자상품, 유사수신행위, 집합투자업, 블록체인, 미술금융

I. 서론

2017년 이후 고액의 미술품을 작은 단위로 분할하여 다수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구매하는 시스템 및 아트테크 플랫폼이 미술계에 등장한 이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분할소유권/조각 투자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¹⁾ 분할소유권 거래 방식은 음악저작권²⁾과 건물³⁾까지 그 범위를 넓히면서 2020년대 투자 및 재테크의 새로운 흐름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령이나 정책당국의 입장이 모호하니까, 기존 법률로 규율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본시장법 등 금융법적으로 새로운 쟁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선례나 연구가 부족하므로 예측가능한 규율이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국내 최초의 음악저작권 플랫폼 ‘뮤직카우’가 유사 금융투자업 관련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는 상황은 이러한 공백 상태를 대변하고 있다.⁴⁾ 이에 반하여, 뮤직카우는 저작권의 사용료 분배 청구권(일반채권)을 분할 판매하므로 민법이 적용되는 사적 자유영역에 속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⁵⁾은 이러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우선, 각종 콘텐츠 분할소유권 거래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상품 또는 파생상품,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서, 유사수신행위 위반 가능성까지 검토한다. 아울러, 분할소유권 거래가 온라인에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상자산에 대한 일반적인 규율 상황을 살펴봄과 동시에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적용 여부 등도 검토한다. 나아가, 분할소유권 거래를 가상화폐 등으로 결제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 Initial Coin Offering(이하, “ICO”) 또는 Security Token Offering(이하, “STO”)에 대한 쟁점도 다루어야 한다. 특히, ICO/STO를 허용하고 있는 홍콩, 싱가포르 등 금융허브 국가를 비롯하여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들도 비교법적 차원에서 분석한다. 이하, 비교적 많은 사업체들이 기본적 틀을 갖추고 가장 활발하게 분할소유권 거래를 성사시키고 있는 미술품 거래 플랫폼 위주로 검토한다.

1) 데일리안, ‘미술품 “문지마 투자”는 옛말…아트테크, 객관적 데이터로 블루칩 선택 지원’, 2021. 9. 2.

2) 더중앙, ‘캠성 도시락 먹었을 뿐인데 저작권료가...요즘 뜨는 “1+투자”’, 2021.11.20.

3) 한국경제TV, “부동산 증권 거래 시장 개장”...카사, 18일 첫 상장·거래 개시, 2020.12.16.

4) 이투데이, “뮤직카우, 유사 금융투자 혐의”, 금감원 철회 맞나, 2021.11.16.

5) 머니투데이, [단독]금감원 막아선 문체부 “뮤직카우는 채권 분배 모델...“민법” 적용”, 2021.12.1.

머신러닝을 통한 가격차별 및 가격담합에 대한 법적 접근

머신러닝을 통한 가격차별 및 가격담합에 대한 법적 접근

정다영 (Dayoung Jeong)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변호사

논문접수 : 2021. 11. 05.

심사개시 : 2021. 11. 08.

게재확정 : 2021. 12. 10.

목 차

- I. 서론
- II. 머신러닝을 통한 가격차별과 가격담합
 - 1. 가격차별의 사례
 - 2. 가격담합의 사례
- III. 개인정보의 가치 산정
 - 1. 개인의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방법
 - 2. 시장의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방법
 - 3. 법적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방법
- IV. 가격차별 및 가격담합에 대한 검토
 - 1. 가격차별과 가격담합의 분류
 - 2. 규율의 필요성
- V. 법 적용의 검토
 - 1. 법 적용의 필요성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
 -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
- VI. 결론

국문초록

머신러닝과 차별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인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런데 머신러닝 인공지능은 사업자로 하여금 각 소비자마다 최대지불용의 가격에 가까운 가격을 설정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들 간에 묵시적인 가격 조정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차별에 대해서도 법적인 규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머신러닝에 활용되는 데이터는 소비자가 충분히 그 가치를 알지 못하였거나 알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제공한 자신의 개인정보라는 점, 프라이버시 선호도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히 소비자후생의 감소로만 파악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가격차별이나 가격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머신러닝 인공지능이 각 소비자별로 가격설정을 위해 고려하는 요소들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경쟁법적인 측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키거나 진입장벽을 형성할 경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으로, 알고리즘을 통해 가격 담합을 할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같은 법 제19조 제1항)로, 각 소비자의 소득 및 소비패턴 등을 파악하여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거나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경우 등에는 불공정거래행위(같은 법 제23조 1항)로 규율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가 어떠한 사업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의한 성과물에 해당하고, 그러한 성과물로서의 데이터를 다른 사업자가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경제적 이익의 침해를 받았음을 주장·증명한다면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로 규율하는 것도 가능하다.

※ 주제어: 머신러닝, 가격차별, 가격담합, 알고리즘, 인공지능, 불공정거래행위, 착취계약

I. 서론

오늘날 우리 삶의 상당부분은 빅데이터(Big Data)와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계 학습) 알고리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사업자들은 시장변화에 대응하여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21년을 기준으로 전세계 빅데이터 및 비즈니스 분석 시장의 규모는 약 2,157억 달러를 형성할 것으로 예측된다.¹⁾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란 어떤 데이터의 입력 값과 이에 대응한 출력 값을 알려주면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에 대해 스스로 데이터를 학습하는 알고리즘을 말한다.²⁾ 데이터 중심시장에서의 알고리즘은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을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수요 측면에서는 이용자들이 가격과 품질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검색비용과 거래비용을 줄이고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공급 측면에서는 역동적인 효율성을 촉진시키는 선순환 메커니즘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생산비용을 절감하며 품질 및 자원 활용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사업과정을 능률화한다.³⁾ 그런데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의 사용은 소비자의 자율성 개념에 도전하면서 소비자의 결정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된다.⁴⁾

사업자가 보유한 이용자의 정보가 특히 이용자의 특성이나 수요에 관한 것일 경우, 사업자로서는 알고리즘을 통한 강화된 권력, 이를테면 가격차별(price discrimination)을 통해 이윤극대화를 추구할 유인이 발생하게 된다.⁵⁾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한 가격차별은 가격담합(price fixing)으로 연결될 가능성 또한 내포한다. 알고리즘은 담합을 촉진시키고 새로운 방식의 조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⁶⁾ 가격비교 웹사이트(aggregator)의 경우 다른 회사의 행동 내지 가격 설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기능하여,⁷⁾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들 간에 묵시적인 가격 조정을 할 수 있게 한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차별(discrimination)’이나 ‘공정성(fairness)’은 유럽연합의 인

1) Goepfert, J., "Global Spending on Big Data and Analytics Solutions Will Reach \$215.7 Billion in 2021, According to a New IDC Spending Guide", IDC, 2021. 8. 17.

(<https://www.idc.com/getdoc.jsp?containerId=prUS48165721>) (최종방문일자: 2021. 10. 30.이며, 이하 모두 동일하다)

2) Cormen, T., Leiserson, C., Rivest, R., and Stein C., Introduction to Algorithms(3rd ed.), The MIT Press, 2009, p. 5.

3) OECD, Algorithms and Collusion - Competition policy in the digital age-, 2017, pp. 14-18.

(<https://www.oecd.org/competition/algorithms-and-collusion.htm>)

4) Mik, E., "The Erosion of Autonomy in Online Consumer Transactions", Law, Innovation and Technology Vol 8, No. 1, 2016, p. 5.

5) Philips, L., The Economics of Price Discrimin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p. 1.

6) OECD(주 3), pp. 14-19.

7) OECD(주 3), pp. 25-26.

공지능백서(White Paper on Artificial Intelligence)⁸⁾에서 말하는 그것과는 결이 다르다. 인공지능백서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trustworthy AI)에서의 '다양성, 비차별성 및 공정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인공지능시스템이 데이터를 학습할 때 편견이 반영되지 않아야 한다는 편향성의 측면을 말한다. 머신러닝과 차별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차별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원리에 반하지 않으면서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고도 적절한 것인가의 기준 하에⁹⁾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인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종차별적이거나¹⁰⁾ 성차별적인¹¹⁾ 사례들이 논의되었고, 데이터의 중립성 및 알고리즘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편향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마케팅 기법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시장을 세분화하고 각 시장별로 상이한 가격을 적용하는 가격차별은 그동안 법학의 연구대상으로 설정되지 않았다. 이는 머신러닝에 의한 분류는 통계적 데이터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 분류의 방법이 간접적이라는 점¹²⁾¹³⁾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차별'의 문제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차별, 특히 가격차별,¹⁴⁾ 그리고 이에서 더 나아가 가격담합과 관련한 부분이다.

이 글에서는 머신러닝을 통한 가격차별과 가격담합의 사례를 살펴보고(II), 개인정보의 가치를 산정하는 다양한 방법을 살펴보겠다(III). 그리고 가격차별과 가격담합의 분류를 검토한

- 8) European Commission, White Paper on Artificial Intelligence - A European approach to excellence and trust, COM(2020) 65 final, 2020. 2. 19.
https://ec.europa.eu/info/sites/default/files/commission-white-paper-artificial-intelligence-feb2020_en.pdf
- 9) 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2헌바43 결정.
- 10) 채용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되는 인공지능이 백인이 주로 사용하는 이름에 대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주로 사용하는 이름보다 50% 이상 더 많은 연락을 한 사례가 있다. Mullainathan, S., "Biased Algorithms Are Easier to Fix Than Biased People", The New York Times, 2019. 12. 6.
<https://www.nytimes.com/2019/12/06/business/algorithm-bias-fix.html>
- 11) 아마존(Amazon)이 개발하던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시스템의 경우 여성지원자의 실력을 낮게 평가하는 성편견 등의 문제로 그 개발이 중도에 포기되었다.
 Dastin, J., "Amazon scraps secret AI recruiting tool that showed bias against women", Reuters, 2018. 10. 11.
<https://www.reuters.com/article/us-amazon-com-jobs-automation-insight-idUSKCN1MK08G>
- 12) 슈퍼마켓에서 아기 기저귀, 젖산 등을 인터넷 장바구니에 넣어둔 여성고객에 대한 맞춤형 광고로 임신 및 출산 관련 용품을 보여준 사례로 Hill, K., "How Target Figured Out A Teen Girl Was Pregnant Before Her Father Did", Forbes, 2012. 2. 16.
<https://www.forbes.com/sites/kashmirhill/2012/02/16/how-target-figured-out-a-teen-girl-was-pregnant-before-her-father-did/?sh=7c9a67136668>
- 13) 보험회사가 물품 구매시 채식 위주의 소비패턴을 보이는 고객을 분류하여 채식주의자 집단으로 분류한 사례로 Zarsky, T., "An Analytic Challenge: Discrimination Theory in the Age of Predictive Analytics", Journal of Law and Policy for the Information Society, Vol. 14, No. 1, 2018, p. 33.
- 14) 가격차별이 헌법적 의미에서의 차별과 중첩되는 경우도 물론 존재한다. 예를 들어 과외 튜터링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해당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도입한 알고리즘으로 인해, 미국에 거주하는 아시아인들은 백인에 비해 같은 서비스에 2배에 가까운 돈을 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홍성욱,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차별", 2018 STEPI Fellowship,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8, 7면.

후, 머신러닝을 통한 경제적인 차별에 있어 소비자의 취약성을 밝히고 공정성과 형평성(equity)의 측면에서 검토하겠다(IV). 이후 경쟁법, 특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를 검토한 후(V),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여 보도록 하겠다(VI).

일부개정방식과 일괄개정법령 제명

실무자료

I. 서론

2018년 정부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해당 법률안은 형식상 제정안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안에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표기되어 있어 형식과 법률안의 명칭이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함에 따라 국회 의견을 수용하여 제명을 「중앙행정기관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으로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바 있다.

그 후 정부 및 국회 입법기준, 일괄개정 입법례, 일본의 입법기준 및 외국 입법례 등을 검토하여 일괄개정 형식에 관한 기준을 국회 의견과 같이 제정 형식으로 변경하였다.

필자는 일괄개정 형식 기준을 변경하면서 일본 사례를 참고했다는 사실을 듣고 정말로 일본에서 그렇게 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필자가 알기로는 일본에서는 일부개정법률도 별도로 제정된다는 점에서 제정이지만, 시행과 동시에 흡수되고 부칙만 남는다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제정과 다르고, 일괄개정방식도 일반적인 일부개정과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뒤늦게나마 일본에서 일부개정방식과 일괄개정방식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검증하고, 법령 입안·심사 기준 변경이 타당한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II. 우리나라에서 일부개정방식과 일괄개정법령 제명

1. 법령 제정·개폐 방식

법령을 제정하면 폐지될 때까지 존속하며, 개정되더라도 동일성을 유지하며, 제정된 법령 중 일부를 개정하는 경우는 일부개정방식, 전부를 개정하는 경우는 전부개정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일부개정 방식에는 개정 대상이 되는 기존 법령과 새로운 개정 법령의 관계에서 개정 내용이 기존 법령의 내용에 흡수되는 흡수개정방식(기존 법령의 일부를 추가·수정·삭제하는 개정 법령이 성립·시행되자마자 그 개정 내용이 기존 법령의 내용에 흡수되는 방식)이고, 개정 법령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증보 방식(기존 법령의 일부를 추가·수정·삭제하는 개정 법령이 성립·시행된 후에도 기존 법령 중에 흡수되지 않고 형식상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기존

